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 조기화〉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33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 조기화(안 제21조)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14.

다. 회 부 일 : 2026.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고,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 조기화 (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2월 20일</u>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u>3월 10일</u>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u>4월 10일</u>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u>5월 31일</u>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2월 5일</u> (<u>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20일</u>)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u>2월 25일</u>(<u>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3월 10일</u>)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1조 제1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u>3월 25일</u>(<u>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u>)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함 (안 제21조 제3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u>5월 15일</u>(<u>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u>)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21조 제4항)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¹⁾, 「국회법」 제128조의2는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²⁾.

1)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법」에서 결산 심의를 정기회 개회 전에 마치도록 한 것은 정기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의에 시간과 역량을 보다 집중하고, 전년도 결산 심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안 심의에 보다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최근 5년간 결산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 결산 심의가 정기회 개회 이후 완료되고 있어, 「국회법」의 취지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결산 심의 현황]

구분	정부 제출일	예결위 상정일	예결위 처리일	본회의 의결일
2024회계연도	2025.5.30.	2025.8.25.	2025.11.27.	2025.11.27.
2023회계연도	2024.5.31.	2024.9.2.	2024.11.29.	2024.12.2.
2022회계연도	2023.5.31.	2023.8.30.	2023.12.20.	2023.12.20.
2021회계연도	2022.5.31.	2022.8.29.	2022.11.7.	2022.11.10.
2020회계연도	2021.5.31.	2021.9.6.	2021.12.2.	2021.12.2.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9호)과, 이에 따라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5월 15일’로 앞당기기 위한 것임.

현행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 관하여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소관별·품종별·회계별 물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³⁾.

이에 각 회계연도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는 재무제표 첨부서류로서 매년 정부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는 물품현재액의 소관별·품종별·회계별 규모, 물품현재액의 증감 추이 및 증감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국회의 결산 심사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물품관리법」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품종별·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따라서 정부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첨부서류인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도 함께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감사원 제출기한 및 감사원 검사보고서 작성기한에 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기간이 더 크게 단축되는데,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단축 기한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진성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9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결산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명 (의안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9호)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	정기회 개회 전까지	6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7호)	각 중앙관서 장의 예비비사용명세서 및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 제출 기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예비금사용명세서 재정경제부 제출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예산처·감사원 제출 기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2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기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5월 6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20일까지)
	정부의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국회 제출 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33호)	각 중앙관서 장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조달청 제출 기한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2월 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통합 및 재정경제부 제출 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감사원 제출 기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2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4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 감사원 검사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31일까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 연도 <u>2월 20일까지</u> 조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장은 이를 통합하여 <u>3월 10일까지</u>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 ----- ----- ----- <u>2월 5일(국회의원 총선거</u> <u>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20일)</u> ----- ----- <u>2</u> <u>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u> <u>해에는 3월 10일)</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 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u>4월 10</u> <u>일까지</u>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 ----- <u>3월 25</u> <u>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u> <u>는 4월 10일)</u>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 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 음 연도 <u>5월 31일까지</u>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 ----- ----- <u>5</u> <u>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u> <u>해에는 5월 31일)</u> -----.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⁴⁾

문 의 처
02)6788-5160

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